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전략*

Governance Strategies fo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in Korea

박문서(Moon-Suh Park)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제언 |
| II. 금융서비스 거버넌스의 배경연구 | 참고문헌 |
| III. 금융서비스 거버넌스의 현황 및 문제점 | Abstract |
| IV.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전략 | |

Abstract

Financial service in economy is same with neural net or vein net of human body. Moreover, every economic entity which has experience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s realizing more importance and power of financial service, and is recognizing financial service as a part of new engine of growth for economic development.

As global linkages relating financial service in the industry are deepened, we can expect that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countries are more conflicted. Because financial service is regarded as critical factors in order to ensure future competitive advantage, more active change of financial service paradigm in Korea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financial service in global business aspect, to prepare the global governance strategies about financial service, and to bring up some idea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by intensifying th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services.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prepare the "Master Law for Financial Service" (provisional name) in advance as governance strategy for financial service. And not only establishing the financial risks prevention system and consumer's protection agency, but financi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actions will have to be included in governance strategy of financial service in Korea.

Key Words : Financial Service, Trade in Services, Governance, Global Trade, Service Industry,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Supervising System

* 이 논문은 2009년도 호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and funded by Howon Univ. Research Promotion Fund)

I. 서론

“돈이 말해준다”(Money talks!)는 속담이 의미하듯 현대 경제시스템에서 ‘돈’이 가지는 역할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확장이 진행될수록 향후에도 돈의 역할과 중요성은 변함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돈의 공급체인과 가치체인 모두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은 실물 부문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현대 경제시스템의 독보적 존재로 부상해 있다. 특히 금융의 불안정이 곧 경제의 불안정을 좌우하는 등 실물경제의 힘을 크게 능가하는 상태로 진전되고 있다.

이제 금융이야말로 기업이든 국가든 이 시대 최고의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더욱이 금융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서비스상품으로 진화되었고,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글로벌 무역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일국의 경제문제를 진단 분석하고 관리하는 일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세계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금융에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자국 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하여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글로벌 서비스상품으로서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금융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환경의 중요한 분수령에서 한국경제 역시 금융시스템의 체계적 개편과 안정적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융감독체계에 관하여 매우 활발하게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주요 쟁점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거의 반성과 현행 시스템의 진단, 그리고 미래의 개편방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금융의 문제는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민은 물론 세계의 모든 경제주체들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금융의 이해관계자는 곧 글로벌 경제주체들이라는 시각에서 문제의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한국경제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요인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글로벌 무역상품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상품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는 물론 금융과 관련된 제반 시스템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한국 금융서비스의 산업발

전과 더불어 서비스무역상품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방법론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되,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선행적 연구결과와 2차적 통계자료를 가공 분석한 현황자료를 실증적으로 조합하여 금융서비스 시스템의 문제 진단 및 대안 수립에 활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현안문제로 부상해 있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 기존 달러화 중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편논의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거버넌스 ‘전략’의 의미는 거버넌스의 분석 또는 점검을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는 ‘포괄적 연구’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밝혀 둔다.

II. 금융서비스 거버넌스의 배경연구

1.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금융은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금융거래는 실물거래에 비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다. 금융거래의 특성 중 하나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대급부 없이 차입자가 미래에 상환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여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금융제도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금융제도는 금융거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과 이에 관련된 제반 규칙 등을 포괄한다. 즉,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과,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금융인프라 등 세 가지로 금융제도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¹⁾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저금리정책,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디폴트스왑(CDS)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급증, 지나친 금융규제 완화 및 미흡한 감독체계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원인은 모두 금융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순방향에 놓여 있는 요인들이므로, 금융위기로 치닫게 된 보다 근본 원인은 ‘지나침’이라는 키워드로 집약되며,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12.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지형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금융지형도에서 현저한 ‘파워 시프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미국·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금융규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나 금융기관들의 규모(덩치)가 만능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금융주도권이 약화되면서 G20를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의 금융정책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책적 공조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국경제는 더 이상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소득계층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크게 확대될 것이므로 감독체계를 비롯한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금융시스템의 개편은 2008-2009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 차원의 대응책으로만 준비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글로벌 서비스상품의 관점에서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금융서비스는 국경이동성이 낮은 국내용 서비스상품 시절을 지나 새로운 서비스무역상품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서비스 거버넌스는 통합과 분산이라는 대척적 컨셉에서 파악된 양자의 강점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의 경험을 이유로 금융규제를 맹목적으로 강화시킨다면 스스로 페러다임 부적응의 시대로 회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한 감독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금융위기의 교훈을 적절히 반영하여 금융시스템을 정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보다 향상된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금융서비스 거버넌스는 국내통화정책이나 외환정책은 물론 은행, 보험, 증권, 파생금융 등 신상품 모두를 총망라하는 시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영역파괴(borderless) 시대가 심화되면서 업종간 내지 영업부문간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트렌드에서 금융서비스라 하여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한국은 금융시스템 전반을 심층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며, 금융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등 대응책 수립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을 미국 월가이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속에 잠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표출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아무리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09년 금융위기로부터 한국이 선행적으로 탈출하였던 경험을 새롭게 기록한 데에서 금융위기의 본원적 발생지를 미국월가 내지 미국 서

브프라임 모기지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는 듯하다.

2. 금융서비스의 거버넌스 필요성

한국경제를 논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인식이 두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제조업 만능의 사고이며, 다른 하나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품성을 인정하는 데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성장의 최대 공로자가 제조업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제조업은 고용없는 성장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가 IT 기반을 공고히 할수록 고용창출의 기대는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제조업 만능의 사고를 하루라도 빨리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비스는 상거래 대상으로서의 상품이라는 인식이 매우 낮다. ‘서비스는 공짜’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교육서비스 또는 의료서비스 등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으며, 참여정부 이후 비교적 활발한 서비스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지도 모른다.

특히 서비스는 무형성 및 저장불가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동성이 낮은 재화로 인식됨에 따라 상품 내지 무역상품으로서의 관심을 끌지 못함으로써 산업정책 내지 무역정책이 과거 패러다임에 묶여지게 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금융서비스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한국경제에서 금융서비스는 서비스상품으로서의 금융을 인식하지 않고, 정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공공서비스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미 경제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거브먼트 시대에서 거버넌스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에도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우는 아직까지 거버넌스 인식이 크게 지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금융서비스를 상품으로 활용하여 국경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아직도 방어전략에만 급급한 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금융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량적 및 정성적 비중과 그 중요성을 감안하고, 동시에 한국경제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금융관련 변수들을 걱정한다면 정책의 변화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정책의 변화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동안 선진국들의 금융서비스상품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한국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어 왔다. 1997년말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부

적응의 좋은 사례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한국경제는 금융감독체계를 포함한 거버넌스 문제를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글로벌 금융서비스 문제로 확장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문제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금융서비스상품의 국경이동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1996년말 OECD 가입과 IMF 8조국 의무국가로 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의 의무를 준수해오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목표로 한 방어적 전략이 많았으며, 금융서비스를 무역상품으로 만들어 해외시장으로 진출시키는 공격적 전략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경제의 공조가 가동되었고, 그러한 글로벌 공조활동의 전면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10년 G20 회의의 의장국으로써 G20 제5차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다.²⁾ 이는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규칙제정자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문제를 글로벌 시각에서 확고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 금융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협상에 대한 시각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1995년 WTO 출범으로 UR 미완성 협정의 하나로 남아 있던 서비스 무역협정(GATS)이 DDA 협상으로 재개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은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협상의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한국은 끊임없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않으면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운명의 국가이며, 그러한 동력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조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서비스 부문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경제의 신경망이자 혈관 기능을 담당하므로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서 해당 부문의 경쟁력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는 과거 금융 거브먼트 시대에서 경험하였던 공공부문에 잠재하고 있는 비효율 등 경쟁력 저하요인들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무역거버넌스 전략을 통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현장에서의 경쟁력을 독자적으로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G20 제4차 정상회의는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5차 정상회의는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 부문의 거버넌스 문제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감독시스템 문제는 세계의 모든 금융서비스의 거래 주체들이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고도로 동질화된 금융서비스를 산업화 내지 상품화하고 이를 통한 기업이익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부합하지 못하고 규제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의 금융서비스는 사실상의 거버넌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국내금융시스템 중심으로 가동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또다른 금융위기를 파생시킬 우려를 잠재하고 있다. 즉, 과거의 금융서비스 관리체계가 감독(supervising)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경계(borderless)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더 이상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는 해외진출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기존의 한국 제조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닦아 놓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적극 활용하면서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제조 비중을 보완하고 언젠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한국 제조업 한계에 사전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 정부, 행정 등 기존의 전통적 개념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대신하여 해당 분야의 ‘새로운 그 무엇’ 또는 ‘개혁적인 그 무엇’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환경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등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패러다임 변화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 운영시스템, 사회문제 해결방식 등을 의미하지만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학문적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³⁾

거버넌스는 구성원들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규칙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그 출발점으로 하여 해당 부문의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규칙에 의한 지배라 하여 집권적 명령과 통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거버넌스 내에서 각 구성원들이 거버넌스 규정을 준수하고 법 또는 규정에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거버넌스의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정부 관련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권력이 행사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결정하는 전통, 제도 및 절차라고 정의되거나, 국가의 경제사회적 자원관리 과정에서 권력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유형으로 정의되

3) 거버넌스는 국정관리, 국정관리체계, 통치양식, 국가경영, 협력적 통치(협치)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명식,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의의 :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안민포럼 발제자료, 2008. 4. 29.)

기도 한다.4) 거버넌스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명한다면 “공적인 방법으로 비용이 충당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처방 또는 허용하는 법률, 규칙, 사법적 결정 및 행정처리 체제(regime)”로 정의되기도 한다.5)

특히 ‘규칙의 체계’(system of rule)로 해석되는 거버넌스는 공식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통치행위와는 달리 공동의 목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거버넌스는 법적 또는 공식적 통제권한 없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 내지 각 부문의 단위 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6)

한편 거버넌스는 곧 ‘네트워크’라는 점을 주요 특징의 하나로 이해되는데, 이때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인 존재이며, 구성원의 자유로운 교체, 일정 부분은 모호하게 규정된 권리 및 의무 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7) 즉, 네트워크는 정부의 공식적 명령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정부와의 공식적 파트너십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결국 거버넌스의 개념에는 정부 이외의 기관 또는 행위자의 폭넓은 포용, 불분명해지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경계와 책임소재, 집합적 행동 문제와 관련된 상호의존적 관계, 자율적 자치 네트워크, 정부의 공권력이나 명령에 의존하지 않는 문제해결능력 등을 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로 담아야 한다는 데에 견해들이 일치하고 있다.8)

Ⅲ. 금융서비스 거버넌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 금융서비스 관련 정책과 문제점

1)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며, 그러한 제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금융기관 업무

4) World Bank, *Governance and Development*, 1992.

5) Lynn, Jr., L., C. Heinrich and C. Hill, *Improving Governance :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Georgetown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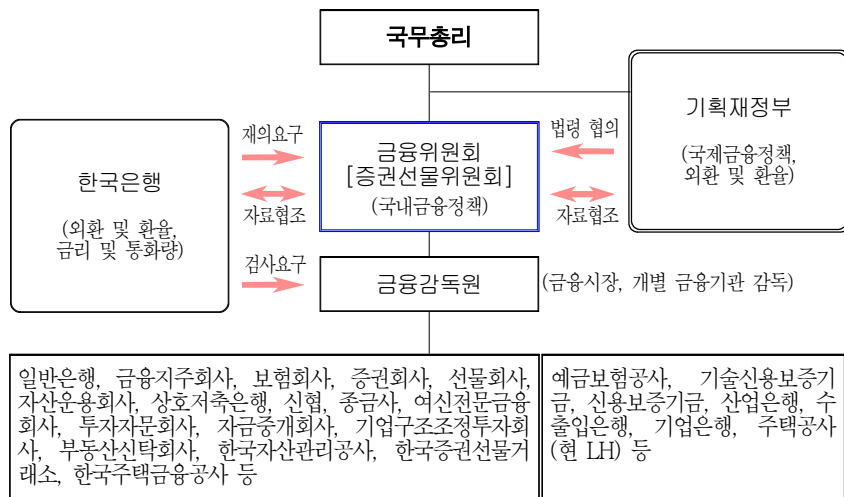
6) Stoker, G., “Urban Political Science and the Challenge of Urban Governance”, in *Debating Governance*(J. Pier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 Newman, J., *Modernizing Governance : New Labor, Policy and Society*, Sage, 2001.

8) 이명석, 전계자료, p. 4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이며, 거버넌스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보충적 자료는 박문서(2009)를 참조.

에 대한 허가, 금지, 제한, 권유 등의 형태로 감독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은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일종의 규제로 이해되고 있다.⁹⁾ 금융거래에서 규제행위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거래를 시장자율에만 맡길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불공정 내지 불건전 거래가 증가함으로써 금융관련 제도의 불안정과 거래위축이 우려되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규제가 정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별로 별도의 금융감독기구를 두는 분산형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통합형 체계로 수정되었는데, 1998년 4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설립됨으로써 업종별 금융감독 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1]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이후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존의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다.¹⁰⁾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

9)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12, p. 109.

10) 금융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업무 및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표 1>에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한 금융제도 변화 연표는 <부표 2>에 요약 정리하였다.

정은 물론 금융감독 규정까지 총괄한다. 즉,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금융감독, 인허가, 법령 제정 및 개정 권한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¹¹⁾

<표 1>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현황

| 부 문 | 법 률 |
|---------------|---|
| 금융정책 관련 (3)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 산업금융 관련 (5) | ○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 구조개선 관련 (5) |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
| 글로벌 금융 관련 (1) |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 은행 관련 (6) | ○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 보험 관련 (2) |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서민금융 관련 (7) |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이체에 관한 특별법, 신용협동조합법 |
| 자본시장 관련 (9) | ○ 공사채등록법, 선물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통화 회사법, 증권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담보부사채신탁법 |
| 자산운용 관련 (3)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 회계 관련 (2)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금융정보분석원 (2)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에 의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주) 2008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45개 법률 소관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2) 선진국 금융감독체계

G20 정상회의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세계 금융경제 질서 구축을 새롭게 논의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 30여 년

11) 금융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동안 지속되어온 G7(선진7개국) 내지 G8(G7+러시아) 중심의 글로벌 금융경제 질서 체제 논의의 마당을 G20로 옮김으로서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금융의 연계성은 그 이동성이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예방, 관리 및 감독정책 간 조화를 담당하는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 FSOC)를 신설하여 감독기구 간 정보교환, 정책조율, 리스크평가, 규제공백 축소협치의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¹²⁾ 또한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요 금융회사를 업종에 관계없이 중요감독대상기관(Tier 1 FHCs)으로 지정하고 동기관을 연준이 감독하도록 하는 등 연준의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FRB 등 다수의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던 소비자보호기능을 「소비자금융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으로 통폐합하며, 부실화된 대형금융기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신속정리절차(resolution regime)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연준(FRB)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면서도 관련 감독기구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준의 단독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의 개편 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이 2009년 12월 11일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대규모의 금융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표 2> 참조).

<표 2> 미국의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소비자금융보호청 신설 | ○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소비자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감독전담 |
| 부실금융기관 지정 폐쇄 | ○ 감독기구들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 폐쇄할 수 있음. |
| 대형금융기관, 부실처리 부담 | ○ 대형 금융기관들은 부실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1,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야 함. |
| 금융기관 보수 제한 | ○ 주주들은 경영진 보수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 투표를 할 수 있음. ○ 감독기관은 부적절한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금지할 수 있음. |
| 파생상품, 헤지펀드 등 감독 | ○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을 감독대상에 포함 |
| 의회, FRB 감시 | ○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결정 등을 감사 |

주) 2009년 12월 11일 현재 미 하원 통과한 개혁방안임.

12) 김성식,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최근 논의동향 및 한은법 개정”, 김성식국회의원실, 2009. 7.

미국의 동 금융개혁안은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을 신설하여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소비자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FPA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한편 영국의 경우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은 2009년 2월 「은행법」(Banking Act 2009)을 제정하여 영란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일부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동년 7월 3일 Geneva Report를 시작으로 7월 8일 재무부의 금융시장개선안과 7월 20일 보수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각각 발표되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목표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 금융시장개선안¹³⁾에 따르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안정위원회(Council for Financial Stability)를 신설하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규정 제정권, 적기시정조치권,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권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FSA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EU의 경우 「거시건전성감독기구」(European System Risk Board, ESRB)를 신설하여 시스템 리스크 위협요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리스크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위기 조기경보 및 대응수단 권고, IMF, FSB 및 역외 국가와의 협력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시건전성감독기구」(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를 개편하여 현재 EU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문별 감독정책 자문기구들을 부문별 감독청(은행, 연금보험, 증권)으로 격상하고 이들간 정책공조를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설치하였다. 부문별 감독청은 회원국 간 감독규정 및 감독관행의 일관성 확립을 위해 각국 감독정책에의 개입을 강화하고, 거래소 및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는 조사 및 임점검사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¹⁴⁾

2. 금융서비스 경쟁력 지표분석

1) 주요 금융서비스 지표

2003년 12월 확정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은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각종 금융제도 및 정책개혁과 함께 금융 IT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

13) Reforming Financial Markets, 2009. 7. 8.

14) 김성식, 전계자료.

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동 전략은 추진동력을 단숨에 상실하고 말았다. 미국의 시사전문지 Foreign Policy는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주요 미래이슈 13개를 “The Next Big Thing”으로 분류하여 금융부문의 위축(shrinkage)을 그 중 하나의 이슈로 소개하고 있다.¹⁵⁾ 이는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장래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미로서, 은행의 기능축소, 정부의 규제강화, 기업의 차입감소, 포트폴리오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성장과 고용을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각국은 예외 없이 금융환경 변화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는 그 자체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상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의 금융위기를 반영하듯 2009년 금융시장의 성숙도 순위가 크게 악화되었다(<표 3> 참조). 또한 금융개발지수도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 2008년 19위에서 2009년 23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금융개발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요국의 제도적 환경, 기업환경, 금융안정성, 은행금융서비스, 비은행금융서비스, 금융시장, 금융접근성 등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종합 평가하여 발표하는 지표이다. 2009년 금융개발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7점 만점에 3.91점(전년대비 0.64점 하락)으로 55개 대상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8년보다 4단계 하락한 순위이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던 동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이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도 순위

| 항 목 | 2008년 순위 | 2009년 순위 | 비고 |
|----------------------|----------|----------|----|
| 금융시장 성숙도 | 35 | 57 | 악화 |
|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 | 11 | 38 | “ |
| 은행대출의 용이성 | 26 | 80 | “ |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 16 | 64 | “ |
|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 65 | 78 | “ |
| 투자자 보호 정도 | 50 | 55 | “ |
| 은행 건전성 | 73 | 90 | “ |
| 증권거래관련 규제 | 31 | 55 | “ |
| 법적 권리 지수 | 52 | 36 | 개선 |

자료 : 기획재정부,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09. 9. 8.

15) “The Next Big Thing”, *Foreign Policy*, May-June, 2009.

<표 4> 금융개발지수 국가별 순위

| 국가 | 2009년 순위 | 2008년 순위 | 2009년 점수 | 전년대비 변동 |
|------|----------|----------|----------|---------|
| 영국 | 1 | 2 | 5.28 | -0.55 |
| 호주 | 2 | 11 | 5.13 | 0.15 |
| 미국 | 3 | 1 | 5.12 | -0.73 |
| 싱가포르 | 4 | 10 | 5.03 | -0.12 |
| 홍콩 | 5 | 8 | 4.97 | -0.26 |
| 캐나다 | 6 | 5 | 4.96 | -0.30 |
| 스위스 | 7 | 7 | 4.91 | -0.32 |
| 네덜란드 | 8 | 9 | 4.85 | -0.37 |
| 일본 | 9 | 4 | 4.64 | -0.64 |
| 덴마크 | 10 | - | 4.64 | - |
| 한국 | 23 | 19 | 3.91 | -0.64 |
| 중국 | 26 | 24 | 3.87 | -0.22 |

* 점수는 7점 만점임.
 자료 : 세계경제포럼(WEF), “2009년 금융개발지수”, 2009. 10. 8.

<표 5> OECD 국가별 금융감독 효율성 및 국제화 순위

| 순위 | 금융감독 효율성 및 감독역량 | 국제화 | 순위 | 금융감독 효율성 및 감독역량 | 국제화 |
|----|-----------------|-------|----|-----------------|------|
| 1 | 아일랜드 | 스위스 | 9 | 네덜란드 | 프랑스 |
| 2 | 덴마크 | 영국 | 10 | 핀란드 | 독일 |
| 3 | 미국 | 네덜란드 | : | : | : |
| 4 | 호주 | 벨기에 | 21 | 한국 | 노르웨이 |
| 5 | 스웨덴 | 미국 | 22 | 노르웨이 | 헝가리 |
| 6 | 스위스 | 룩셈부르크 | 23 | 일본 | 그리스 |
| 7 |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 24 | 헝가리 | 체코 |
| 8 | 영국 | 아이슬랜드 | 25 | 이탈리아 | 한국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강국평가모형(MEGA) 보고서, 200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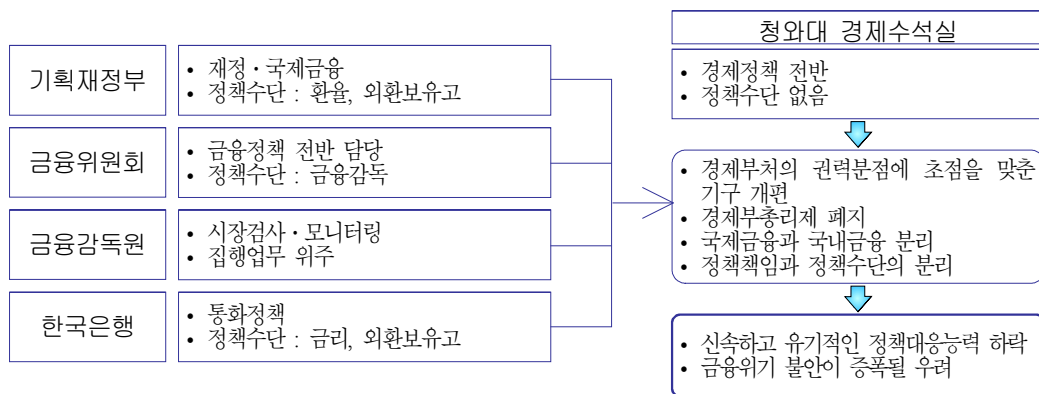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감독기관의 역량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즉,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감독역량(efficiency & capability)은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¹⁶⁾ 금융산

16) 금융감독원의 금융강국평가모형(MEGA)은 ▷금융산업의 성숙도(M), ▷효율성 및 감독역량(E), ▷국제화(G), ▷금융시장 규모(A)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계량평가 결과와 비계량적 요소를 감안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금융강국 순위를 매긴 것으로, 화폐가치 안정성, 금융의 자유 및 투명성, 책임성, 금융전문인력 등을 종합해 금융시스템 효율성과 감독역량을 계량 평가한 결과이다.

업의 국제화 지수 역시 스위스(1위), 영국(2위), 미국(5위), 일본(12위) 등에 이어 25위로 나타나 비교대상국 가운데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서비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확고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함을 잘 알 수 있다.

2)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문제점

금융서비스 감독체계가 전문화를 이유로 지나치게 분리 분산될 경우 거버넌스 체계는 그 자체로서 효율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금융 부문과 국제금융 부문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어서 금융감독 시스템 상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저하시키는 물론 부처간 이견노출 심화와 더불어 정보공유의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2008~20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그림 2] 참조). 즉, 금융서비스 거버넌트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으며, 따라서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 분산과 집중이라는 대책점을 적절히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세부 영역별 전문성을 강조하는 문제와 통합 조정이라는 기능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되, 금융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정책의 효율성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료 : 「매일경제」, “세계금융시장 대혼란 : 금융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매경 기획시리즈), 2008. 10. 6.

[그림 2] 금융서비스의 거버넌스 문제점 예시

글로벌 금융서비스 거버넌스의 시각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감독권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하여 감독권의 중심이 한국은행으로 이동하거나

현행처럼 유지되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보다는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에 정통한 인적 조직이나 수행능력을 얼마나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관치금융으로 흘러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전략에서 또 하나의 고민은 통합형 거버넌스 구조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형 거버넌스 구조를 택할 것인지에 있다.

IV.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전략

1. 전략의 목표 및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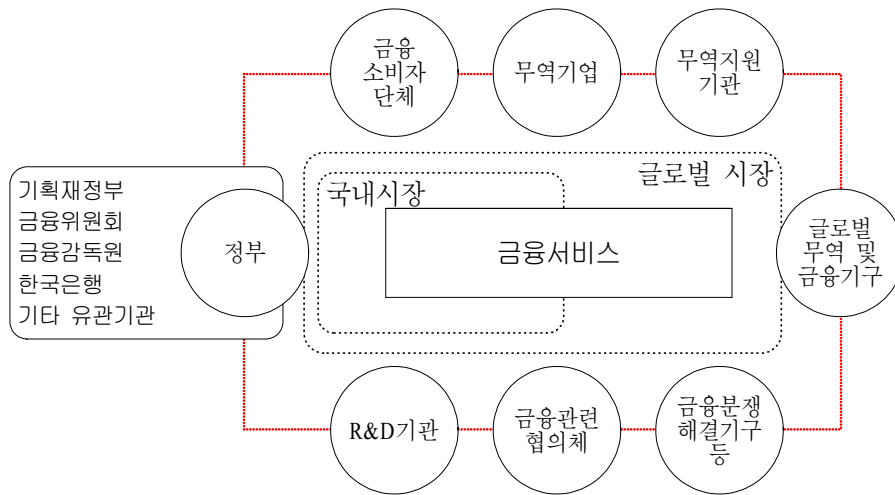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전략은 기존의 금융감독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또는 새로운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로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금융의 본질적 역할 내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금융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쪽에 더 많은 의미를 둔다. 물론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로만 접근하더라도 거버넌스 개념이 의도하는 목표와 방향에 부응하는 한 거버넌스 전략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겠으나 기존의 거버넌스 개념으로 진행되는 금융감독시스템 논의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전략의 목표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의 영역에서 규제와 탈규제(규제완화)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09년 현재로서는 그나마 ‘혁신’의 문제로 그 수위를 조절해 나가고 있는 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원빈곤국 및 시장협소국이라는 2대 제약조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의 거버넌스 목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지향성을 전제로 삼아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무역거버넌스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서비스 무역거버넌스 전략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협상의 문제를 국내 금융시장 방어전략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불성설일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 표준의 문제도 그 대응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즉, 국내 금융시스템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이원화시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전략의 기본 프레임은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고, 이에 요구되는 목표와 관련 영역들은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전략구도

금융서비스 무역거버넌스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서비스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있다. 즉, 거버넌스 부재에서 야기될 수 있는 효율성 저하, 예기치 못한 무역리스크 발생,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관리 능력 부재 등 금융서비스의 산업 및 무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무역거버넌스 정립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들 목표는 크게 경쟁력 향상 부문, 무역리스크 예방, 무역인프라 구축, 이해당사자간 갈등관리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무역거버넌스의 주요 기능 내지 역할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서비스의 수출지원 및 서비스수입의 효율화
- 금융산업 부문의 규제완화 및 금융서비스 감독시스템의 정비
- 금융자원의 최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

- 금융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 수출모델 개발, 시장 및 상품정보의 축적, 금융통계관리 등
- 글로벌 금융시장 개척 방법론 제시(마케팅 등)
- 글로벌 금융서비스 무역계약모델의 정형화, 수출입 매뉴얼 준비
- 금융서비스 무역분야의 학술정보 및 지식의 제공 : 사례축적 및 활용, 성과 평가 등

〈표 6〉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목표 및 영역

| 목 표 | 주요 영역 |
|--------|--|
| 경쟁력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서비스의 무역비전(마스트플랜, 전략 등) 제시 ○ 글로벌 협력(금융서비스 무역협상) 담당 ○ 금융서비스 수출지원 ○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 금융거래 모니터링 및 평가 ○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표준화 |
| 리스크 예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 ○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투자자) 보호(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등) ○ 글로벌 문화충돌 예방 ○ 금융서비스 관련 안전 조치(기술유출 등) |
| 인프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서비스 무역전문인력 양성 ○ 금융서비스 무역관련 학술정보지식의 축적 ○ 금융서비스의 무역사례 발굴 및 활용, 금융서비스수출매뉴얼 준비 ○ 금융서비스의 무역자원관리(무역기업에의 금융지원 등) ○ 금융서비스 관련 통계 관리 및 수출입 실적 관리 |
| 갈등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업무분장 및 조정, 법률 관할의 문제, 금융분쟁해결기구 ○ 수출기업 지원전략 개발(수출보험, 무역금융 등) ○ 금융자원 할당(예산배분 및 관리) 등 |

자료 : 박문서(2009)의 내용을 금융서비스 프레임에 맞추어 재작성

2) 전략의 기본방향

경제사회 현상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 순리이다. 더욱이 디지털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대응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금융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전략은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내지 무역거버넌스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만큼 경제의 글로벌화 현상의 중심에 한국경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혹여 2008년 금융위기를 이유로 글로벌화 및 규제완화의 트렌드를 역행하는 전략기조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글로벌화 및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표 7>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산업 발전추세 전망

| 구분 | 위기 이전 | 위기 이후 |
|--------|---|--|
| 글로벌화 | ○ 금융거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의미 약화 ○ 금융의 국가간 연계성 심화, 글로벌 통합화 | ○ 기술의 지속발전으로 제약 완화 ○ 국가간 연계성 강화, 통합화 추세지속 |
| 증권화 | ○ 직접금융 비중 상승 ○ 금융자산 유동화 활성화 | ○ 증권화 추세 약화 ○ 그림자 금융 퇴조 |
| 겸업화 | ○ GLB법으로 겸업화 가속 ○ 금융회사의 금융 수퍼마켓화 | ○ 상업은행 비중 상승 ○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겸업화 |
| 대형화 | ○ 합병, 지주사 방식으로 대형화 ○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 group)화 | ○ SIFI 규제강화로 대형화 추세 약화 ○ 중형 M&A로 새로운 금융강자 출현 |
| 전자정보화 | ○ 전통적 형태의 점포 중요성 감소 ○ 금융기능 : 자금중개에서 정보수집, 분석, 활용 | ○ 추세 가속화 |
| 규제감독 | ○ 금융규제의 완화, 위험감독의 강화 | ○ 규제감독의 전반적 강화 ○ 거시건전성 정책·감독의 강화 |
| 금융권력이동 | ○ 미국, 유럽 중심 ○ 금융기관의 규모가 중요 ○ 금융산업의 주도권이 공급측면에 있음 ○ 규제완화 추세 | ○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증대 ○ 규모보다는 개성 및 창의성 중시 ○ 금융수요(소비자) 측면 중시 ○ 규제로의 회귀 추세 |

자료 : 윤석현(2009)의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 보완 작성

첫째,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국내 산업 및 경제운용이 경직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금융 인식이 지연됨으로써 비즈니스 세계에서 관심이 소홀해지는 등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는 경제의 유희유 기능을 넘어 투자대상 상품이 되기도 하고 타 산업에 결합되어 상품성을 높여주는 지원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인식이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이 다양화될 수 있고, 이로써 한국이 지향하는 성장동력산업으로써 금융서비스 산업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상품으로서의 금융서비스를 인식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둘째, 금융서비스 관련 제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화 시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금융서비스의 글로벌화 논의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의 부응, 글로벌 금융표준에의 일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상품의 해외진출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환경에는 WTO 서비스 협상을 비롯, OECD 규범, FTA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관련 협정들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서비스가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확대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선

택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회사에 대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준수가 의무화되므로 글로벌 회계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금융부문의 국제표준 준수의 문제이다. 이미 상거래 자체가 무국경 상태로 국내외 시장을 넘나들고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상거래의 결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라면 당연히 국제표준 준수의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결제 솔루션 등에 있어서 글로벌 표준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에는 선점효과가 따르므로 플레이커 입장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관련 법규 등 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다.¹⁷⁾ 다만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전략 추진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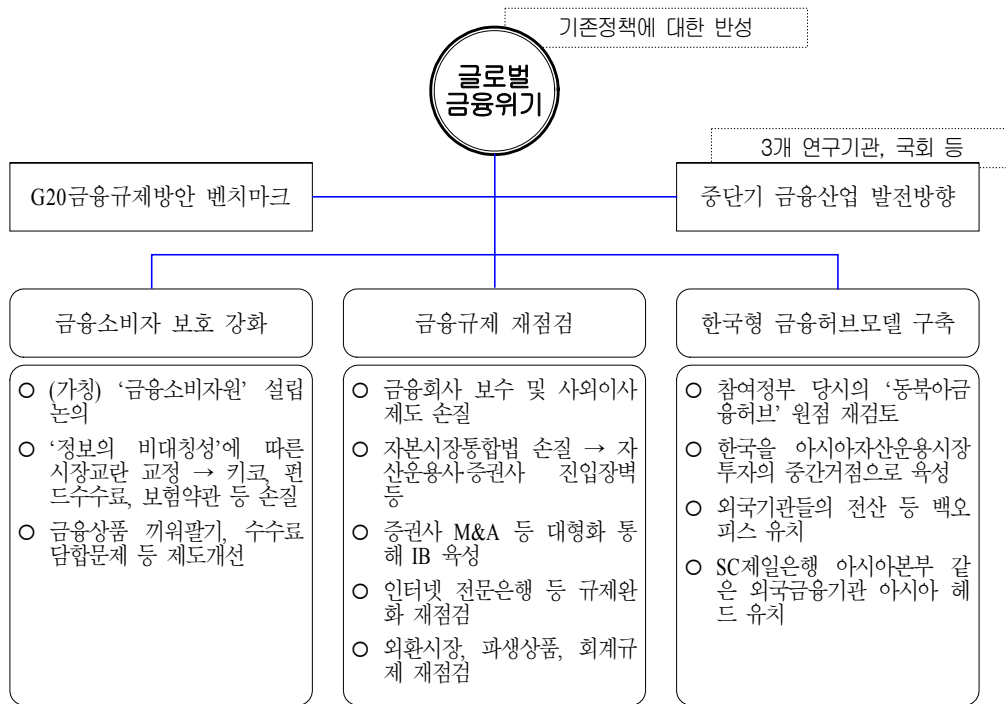
셋째,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의 통일화 노력이 시급하다. 거버넌스라 하여 법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일탈하여 통치, 관리 및 규제 등의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제도적 장치들이 지나치게 혼란스러워 역기능을 초래한다거나 불요불급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불러일으킨다면 당연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스템이 국내시장에 국한하여 작동되는 시대는 아니므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부합하도록 통일화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서비스 소비자를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기관들의 권한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은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금융감독체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장치들을 설립하거나 설립 준비 중에 있다.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들은 금융서비스 상품의 내용, 비용, 위험성 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금융서비스 관련 분쟁해결 장치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서비스 역시 중요한 무역상품이므로 R&D 기능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17) <http://www.fnhubkorea.kr> 웹사이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R&D 기능이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금융서비스 R&D 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은 금융서비스 부문의 중요한 거버넌스 주체가 된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비롯하여 금융 관련 독립적 민간연구원이거나 금융기관 부설연구원 또는 경제연구원들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서비스 상품을 디자인하고 이를 수출하는 데에 요구되는 제반 프로세스를 기획할 수 있다. 이들 금융서비스 R&D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911/e2009111118034469890.htm>

[그림 4] 정부의 금융정책 전환 방향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그림 4]에 도식화한 바와 같이 금융정책의 향후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전환의 배경에는 아직도 감독기관 간 권한 갈등의 그림자들이 남아 있으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거래활동을 유도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경쟁력 향상 등의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전략의 기본적 목표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된다.

2. 금융서비스의 무역거버넌스 전략과제

이제 금융을 과거의 ‘금융’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일자리창출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글로벌 무역상품으로 금융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위기는 신용경색(유동성 공급부족 등)이나 주식폭락, 금리상승, 환율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그 변동폭이 급등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산업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에 고통을 안겨주는 연쇄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절대적으로 예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시스템의 문제이든 외부환경변수에 의한 것이든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전략은 이와 같은 금융위기를 사전예방하고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유용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전략은 첫째,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한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금융서비스를 인식할 것, 둘째, 중요한 글로벌 무역상품으로서 금융서비스를 인식할 것, 셋째, 글로벌 시각에서 모든 금융서비스 문제를 접근할 것 등을 기본적 철학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론 상의 철학은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에 순응할뿐더러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전략은 금융서비스 부문의 무역거버넌스 문제로 귀결되며, 앞에서 살펴본 거버넌스 전략의 기본방향을 저변에 두고 법제도적 측면, 예방적 측면, 인프라 측면 등의 관점에서 전략의 주요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1) 금융서비스 기본법 입법

현행의 금융감독체계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전반에 관련된 약 45개의 금융관련 법률을 관할하고 있다. 금융관련 법률은 곧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문제와 직결되므로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금융서비스 기본법은 「금융기본법」(가칭)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버넌스 전략의 각 항목별 실천과제들을 법조항에 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거버넌스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관련법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한국은행법인지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법인지 혼란스러우며, 이 때문에 금융컨트롤타워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2008년 금융위기에서 가감없이 노출시킨 바 있다.

특히 현행의 금융관련법을 보면 법조항들의 교차정의, 관할범위의 중복성,¹⁸⁾ 법해석 및 준거조항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혼선 및 혼란초래 등의 발원지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가칭 「금융기본법」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설치법의 내용을 포괄하는 한편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거버넌스의 모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입법체계에 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2) 금융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예방은 최선의 대책이라는 말은 금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서비스 거래는 경제활동 참여자 모두가 곧 이해관계당사자이다. 이를 국가차원에 본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서비스의 직접적 이해당사국이다. 그만큼 금융서비스 거래에는 갈등요인이 많다는 의미가 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변수들이 금융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할 수밖에 없다. 금융서비스의 이동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파생상품이 증가할수록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지만 금융서비스에도 예외 없이 영역과괴(borderless) 현상이 가중되면서 그 대응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 보완 대책 없는 글로벌화 또는 규제완화는 있을 수 없다.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은 그 중요성을 더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거버넌스 전략의 필수요소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금융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대응노력은 좀더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금융서비스 소비자 보호

지금까지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문제접근의 기초가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권력이동(power shift)하는 시장의 추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국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제적 기구를 설치하거나 제도적 장치

18) 우리나라 금융관련 법안들에 정의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법안마다 제각각이어서 법이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부표 3> 참조.

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 거버넌스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금융서비스 소비자 보호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편이다.¹⁹⁾

금융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목표는 소비자보호원(소비자원)을 통한 수요사이드 측면 또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활용한 공급사이드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달성할 수 있으나 이는 소극적 보호정책일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향후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전략에 있어서 좀더 비중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가령 금융서비스 소비자보호센터와 같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분쟁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리를 사전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4)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 R&D 기능 강화

글로벌 금융서비스 시스템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금융 창의성 증진을 위해 금융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교육의 영역은 기본재무교육, 회계부문, 신용관리교육, 국제금융 및 외환 부문 등 금융 전반에 걸친 교육을 통해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 종사자들의 숙련도가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도 교육과 연구 기능은 필수적 요소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심화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은 물론, 현행 금융연구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시켜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5) 금융서비스 해외진출 시스템

글로벌 금융서비스 시장을 내다보는 안목은 거버넌스 전략의 사실상 핵심이다. 금융서비스 관련 업종별 단체나 수출입협의체와 같은 민간기구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거브먼트 시대의 정부주도형 진출전략은 추진력 측면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자칫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현재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해외진출 업무에 민간금융기관들의 참여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19) 금융서비스의 소비자 범주에는 금융투자자를 포함한다.

V. 결론 및 제언

거버넌스 문제는 ‘규칙에 의한 지배’의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권력독점 내지 권합집중에 의해 야기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거버넌스 참여자들에 의하여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물론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전략 수립(plan), 실행(do) 및 피드백(see) 등 전 과정을 교차 체크하거나 협업(collaboration) 과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리스크들을 사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전략을 통하여 한정된 금융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당하거나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우려도 있겠지만 현대사회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그러한 고민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은 금융 그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과 경제사회의 요구를 감안할 때 새로운 모습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서비스에 대한 각국들의 인식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자본의 공급체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주역이자 자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을 위한 논의들이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달러화 내지 구미 국가들 중심의 금융시장을 아시아로 분산시키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는 때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금융은 중요한 서비스무역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처럼 국경이동성이 낮은 재화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앞으로 불어닥칠 서비스 부문의 홍역에서 쉽사리 탈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에서 경험하였던 무역지식들이 서비스무역의 경우에도 원형 그대로 응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제홍역이 예견되는 데에는 서비스무역 관련 거버넌스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금융서비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거버넌스 환경은 미국 달러 중심에서 유로, 위엔화 등으로 다극화되고 있고 IMF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물론 금융경쟁력의 중심이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금융서비스의 글로벌화 및 규제완화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2009년 현재 각국들의 정책기조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역시 글로벌화이며 금융규제완화의 방향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적 조율 노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인식은 아직도 취약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금융서비스의 거버넌스 구현을 지연시킬 수 있다. 금융서비스는 경제의 신경망 내지 혈관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금융 부문이 호전되지 않으면 경제 자체의 호전을 체감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금융서비스 부문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조업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장기적 안목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는 것이 한국경제가 선택해야 할 전략이다. 그 대안으로 금융서비스를 내세울 수 있으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그리고 유용한 무역상품으로서 금융서비스를 인식해야 한다.

금융서비스가 1차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금융소비자로서의 국민을 만족시켜야 하고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의 문제는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전 부문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연구의 폭을 좁히는 일이 당연시되지만 지나칠 정도로 정밀하게 특정 금융문제에 접근하는 일은 나무는 보되 숲을 볼 수 없게 되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성식(2009. 7),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최근 논의동향 및 한은법 개정”, 김성식국회의원실.
- 김홍범(2005), 「한국 금융감독 개편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문서(2009. 6),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분석과 리모델링 전략”,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 반혜정(2009. 6),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국제화 전략 및 자본조달정책”,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34권 제3호, pp. 195-220.
- 심영(2002. 2),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방향”, 「국제법무연구」, 제6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 안상욱·최홍식(2001. 5), 「금융감독체제의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 유정석(2009. 10. 10), “글로벌 금융위기 1년 : 회고와 전망”, Real Estate Focus.
- 윤석현(2009),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제2권 제3호.
- 이명석(2008. 4. 29),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의의 :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안민포럼 발제자료.

- 이윤석(2009. 6. 4), “글로벌 금융위기의 추이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 정순섭(2002),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상)”,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
- 황인성(2009. 12. 9),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대응”, SERI CEO Information, 제734호.
- 홍준형(2001. 2),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와 개혁방향”,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 한국은행(2005. 12),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2006. 12),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 Florini, Ann(2003), “From Protest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Global Governance”, in *Global Governance: Architecture for the World Economy*, ed. Berlin: Springer-Verlag LLC.
- Heal, Geoffrey(2003), “Biodiversity and Globalization”, in *Global Governance: Architecture for the World Economy*, ed. Berlin: Springer-Verlag LLC.
- Hufbauer, Gary Clyde(2003), “Looking 30 Years Ahead in Global Governance”, in *Global Governance: Architecture for the World Economy*, ed. Berlin: Springer-Verlag LLC.
- Hufbauer, Gary Clyde(October 2008), *Global Governance: Old and New Issues*, Kiel Working Paper No. 1460.
- Lynn, Jr., L., C. Heinrich and C. Hill(2001), *Improving Governance :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Georgetown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 Newman, J.(2001), *Modernizing Governance : New Labor, Policy and Society*, Sage.
- Peters, B. Guy(1996), *The Future of Governing : Four Emerging Model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Rhodes, R. A. W.(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 Sylvia, Ostry(2003), “What are the Necessary Ingredients for the World Trading Order?”, in *Global Governance: Architecture for the World Economy*, ed. Berlin: Springer-Verlag LLC.
- Siebert, Horst(2003), *Global Governance: Architecture for the World Economy*, Berlin: Springer-Verlag LLC.
- Stoker, G.(2000), “Urban Political Science and the Challenge of Urban Governance”, in *Debating Governance*(J. Pierre,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1992), *Governance and Development*.
- <http://www.seri.or.kr>
-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http://www.fnhubkorea.kr>

〈부표 1〉 금융위원회 일반 사항

| | | | |
|---------------|---|---|------|
| 근거 법률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 2008.2.29 개정) | | |
| 기능 (법의 목적) | ○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 | 제1조 |
| 지위 | ○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 | | 제3조 |
| 구성 | ○ 9인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위원)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 | 제4조 |
| 소관사무 |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들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 제17조 |
| | ○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1.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기타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제18조 |
| 증권선물위원회 | 소관사무 |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금융위원회 소관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 제19조 |
| 금융감독원 | 기능 |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 | 제24조 |
| | 업무 | ○ 동 법 제38조에 규정된 검사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와 동 검사결과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그리고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 | 제37조 |
| | 검사대상기관 | ○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제38조 |

자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 작성

<부표 2> 우리나라 금융제도 관련 주요 연표

| 연도 | 주요 내용 |
|--------|---|
| 1950년대 | 1950 ○ 외국환관리규정 제정,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 제정, 한국은행 창립(6월),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6.5) 1951 ○ 한국조폐공사 설립 1953 ○ 통화개혁(100원圓→1환圓)(2월), 대한증권업협회 발족(11월) 1955 ○ IMF 및 IBRD 가입 1956 ○ 한국증권거래소 설립(3.3 업무개시) 1958 ○ 국채파동 발발 |
| 1960년대 | 1960 ○ 외자도입촉진법 제정 1961 ○ 외국환관리법 제정 1962 ○ 이자제한법 제정, 증권거래법 제정, 상법 제정, 수출진흥법 제정 1966 ○ 외자도입법 제정(8월), ADB 가입(11월) 1967 ○ GATT 가입(3.15) 1968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1.22) 수출보험법 제정(12.31) |
| 1970년대 | 1972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 발표(8.3), 기업공개촉진법제정(12.30) 1976 ○ 신용보증기금창립(6.10), 한국수출입은행 창립(7.1), 증권거래법 제정(구법폐지, 12.22) 1977 ○ 은행지रो제도 실시, 증권관리위원회 구성, 증권감독원 설립 1978 ○ 대한보험공사 설립(3.2) |
| 1980년대 | 1980 ○ 선물거래제도 도입(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12.31) 1982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12.31) 1983 ○ 외자도입법 제정(구법폐지, 12.31) 1987 ○ 주식장외시장 개설(4.1), 신용카드업법 제정(5.30) 1988 ○ IMF 제8조국 가입(11.1), 자본시장국제화계획(12.2), 금리자유화조치 시행(12.5) 1989 ○ 증권시장부양대책(12.12) |
| 1990년대 | 1990 ○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3.2), 보험감독원 설립(4.1), 증권시장안정기금 설치(5.4) 1991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정(3.8), 4단계금리자유화추진계획(8.23) 1992 ○ 국내주식시장 개방(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허용, 1.3) 1993 ○ 신경제5개년계획 발표(7.2), 금융실명제 실시(8.12) 1995 ○ 자본시장자유화방안 발표(10.11), 예금보호법 제정(12.29) 1996 ○ 예금보험공사 설립(6.1), MMF 허용, CMA 허용, OECD 가입(12.12) 1997 ○ 환율일일변동허용폭 폐지(12.16), 이자제한법 폐지,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12.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2.29) 1998 ○ 외국환거래법 제정(9.2) 1999 ○ 한국선물거래소 개장(4.23) |
| 2000년대 | 2000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제정(1.12), 시장리스크 기준 BIS 자기자본 규제제도 도입방안 발표(3.3),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3.27) 2001 ○ 제2단계 외환자유화 및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1.1),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11.28) 2002 ○ 시장리스크 기준 BIS 자기자본 규제제도 시행(1.1), 신용카드종합대책(5.23), 가계대출건전성강화대책(10.11), 코스닥시장신뢰회복방안(12.10) 2003 ○ 금융시장안정대책(4.3), 1단계방카슈랑스 시행(8.30), 한국은행법7차개정(9.3),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 발표(12.11) 2004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1.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1.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1.29), 신BIS협약 도입계획 발표(12.22) 200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3.31),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2006 ○ 해외투자 촉진방안 및 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확대방안 발표(1.6),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 발표(2.17),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3.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6.29) 2007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A3→A2)(7.25), 「국제회계기준(K-IFRS)」 인가(12.21) 2008 ○ 금융감독체계 개편(금융위원회 설치, 2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한도 폐지)(5.30) 2009 ○ 한국은행, 36년만에 새 고액권 50,000원권 발행 개시(6.2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상향 조정)(7.23), 금융감독원, 「은행권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 도입(9.1) |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12 및 한국은행 월별 경제일지 각호에서 발췌 작성

<부표 3> 금융기관에 관한 용어정의의 혼잡성 사례

| 관련 법규 | 주요 내용 |
|---|---|
| 한국은행법 제11조 | 제11조 (금융기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③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9324호] 제2조 |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삭제 <2007.8.3>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삭제 <2007.8.3> 파. 삭제 <2007.8.3>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채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41호]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차.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8.4.4 개정) 제3조 (정의) | ○ “금융업관련법”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산업발전법, 외국환거래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 “금융기관” : 설립·해산, 영업의 인허가, 승인 또는 업무감독·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관계기관·단체 등 |

| | |
|---------------------------|---|
| <p>외국환거래법[법률 제9617호]</p> | <p>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제1항 제17호 17.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8호] 제7조(금융기관)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p> |
| <p>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9325호]</p> | <p>제2조 (정의) 제3호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p> |

자료 : 관련 법령에서 발췌 작성